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5. 12. 2. 공포, ’2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나.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 7. 2. ~ 8. 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2. 중소기업이 국외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3.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

③ 제2항 각호에 따른 물품의 인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 략)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2조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소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u> 2. <u>중소기업이 국외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u> 3. <u>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u> 4. <u>그 밖에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u> <p>③ <u>제2항 각호에 따른 물품의 인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48